

차입원가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유재권^{1*}

¹상명대학교 경영학부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in relation to Borrowing Costs

Jae-Kwon Yoo^{1*}

¹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 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to narrow down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in relation to borrowing costs. Accounting for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under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should be revised to converge into KIFRS. The provision of corporate income tax law relating to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should be applied on the optional basis rather than compulsory application especially for non-public entities. The range of qualifying assets for capitalization under the tax law should be reviewed to comply with KIFRS.

Key Words : Borrowing Costs,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KIFRS

1. 서론

차입원가를 자본화할지 기간비용으로 처리할지에 관한 논의는 회계학의 오래된 주제이며,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이에 관한 회계처리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이 적용하게 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에서 종전의 비용처리 원칙을 불허하고 자본화를 강제함으로써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KIFRS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원가에 관한 회계처리 내용이 2010년까지 적용해온 종전기업회계기준을 거의 답습한 수준이어서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덜어주 기에도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KIFRS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강제하고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계처리의 간편성 도모와 기업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회계처리 대안의 경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감안하여 새롭게 제정된 KIFRS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세무회계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내용은 KIFRS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에 상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토록 하는 것은 큰 실익도 없이 기업들의 세무회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이 논문은 2011년도 상명대학교 연구비를 지원 받았음.

*교신저자 : 유재권(jkyoo@smu.ac.kr)

접수일 11년 11월 04일

수정일 11년 12월 12일

계재확정일 12년 01월 05일

있다. KIFRS에서 종전의 비용처리 원칙을 불허하고 자본화를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되더라도 회계처리의 간편성을 도모하고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입장을 고수하는 한, 비상장기업이 기업회계에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를 자본화하는 복잡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상당한 업무부담이 남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2. 차입원가 관련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2.1 기업회계기준

2.1.1 2001년 제정 기업회계기준서(제7호)

차입원가의 자본화 여부에 관한 논의는 회계학의 오래된 주제이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이에 관한 회계처리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01년에 개정되어 2010년까지 적용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에서는 금융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도 허용하였다. 이는 금융비용 자본화 회계처리가 이전의 강제규정에서 선택규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들이 KIFRS를 적용하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들이 새로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이 기준은 2010년까지만 적용된다.

2.1.2 2008년 제정 기업회계기준서(제1023호)

2007년 3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큰 변혁을 겪었다. 2008년 11월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KIFRS)가 제정되었고,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라 함)가 2007년 개정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이하 IAS라 함) 23(Borrowing Costs)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종전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과 비교할 때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관련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강제화했다는 점이다. IASB는 적격자산과 관련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것이 그 자산의 원가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회계처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개초안에 대해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전면개정된 IAS 23은 IASB가 미국의 기준 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기 정합화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US GAAP과 IFRS와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비춰볼 때 적격자산의 취득 등과 관련한 차입원가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대안을 삭제한 주된 이유가 회계 논리적 타당성보다 US GAAP과의 정합성 달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1.3 2009년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제18장)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009년 11월에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에 따르면,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격자산이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종전기업회계기준의 자본화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KIFRS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던 일부 용어를 KIFRS의 용어로 대체하였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KIFRS보다 종전기업회계기준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KIFRS에서 차입원가의 기간비용 처리를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입원가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KIFRS보다 한 해 늦은 시점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면서도 KIFRS와는 달리 차입원가의 기간비용 처리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세무회계에서 손금불산입의 의미는 기업회계상의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자본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무회계상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는 기업회계(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자산과 그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종전에는 법인세법에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KIFRS 도입으로 결산상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강제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일반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조치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무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자본화대상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 회계처리를 선택하더라도 세무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비상장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2.3 선행연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는 불가피하게 세무조정에 따른 기업의 업무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차입원가 및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는 세무조정이 복잡하여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큰 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건영과 조성표(1998)는 기업회계기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차입비용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자본화대상자산, 자본화되는 차입비용, 자본화 기간 등에 관하여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신현걸(2003)은 2001년 12월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가 금융비용 자본화 여부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일반차입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금융비용이 자산 취득원가

에 과도하게 산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본화이자율 계산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무회계의 건설자금이자 규정과 기업회계의 자본화 금융비용 규정이 서로 달라 기업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영기와 박연희(2006)는 자산취득관련 금융비용의 회계처리에 재량권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직전연도 대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자본화를 선택한다고 보고하였고, 자본화 회계선택에 따라 산출된 이익정보와 기간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의 이익정보에 대해서 시장이 차별적으로 반응함을 검증하였다. 문성환과 김경태(2009)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이 복잡하여 세무조정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문제점

3.1 기업회계 이원화에 따른 복잡성 증가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은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비상장기업 중 KIFRS를 선택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상장기업을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한 주된 이유는 상장기업에 비해서 회계인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정책적 배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비해서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자본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회계처리에서 KIFRS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실무상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IFRS에서 차입원가의 기간비용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이를 차입원가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삼은 것은 비록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더라도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업무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정책적 배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 11월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KIFRS)보다 한 해 늦은 시점인 2009년 11월에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복잡한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부분을 굳이 KIFRS와 다르게 규정할 논리적 타당성 또는 정책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그 내용면에서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보다 종전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자본화

회계처리와 더 유사하다. 2001년에 제정된 종전기업회계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 주된 준거기준으로 삼았던 IAS 23(Borrowing Costs)은 US GAAP과의 정합성 제고를 명분으로 2007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2008년 제정된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보다 1년 늦은 시점에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3.2 세무조정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을 유발시킨다. 특히,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이 매우 복잡하여 실무상 많은 업무부담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성환과 김성태, 2009). 2011년부터 기업회계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이들 두 기준 간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업무 및 조세행정 측면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장기업은 종전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 허용되던 차입원가의 기간비용 회계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모두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본화 회계처리는 기간비용 회계처리에 비해서 세무회계상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세무조정 업무부담이 종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종전처럼 차입원가의 기간비용 회계처리가 허용되므로 기간비용 회계처리를 선택할 경우 세무조정 업무부담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다만, 자본화 회계처리에서 KIFRS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이 차입원가의 자본화 회계처리를 선택하더라도 상장기업과 세무조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실무상 혼선이 우려된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기업회계를 전제로 세무행정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한 세무회계 분야에서 상당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개선방안

4.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서로 다른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서도 기업회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 제고와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의 업무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부분을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KIFRS는 국제적 정합성 때문에 회계처리의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에서만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종전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준거기준이던 IAS 23(Borrowing Costs)이 2007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이미 그와 동일한 내용이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종전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내용에 준거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부분을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2 법인세법 개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추구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완전히 일치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기업들의 세무조정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토록 강제화하는 것은 기업들의 세무조정 업무부담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더라도 이는 추후 반대방향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 결국 과세기간 사이의 소득의 크기에 차이를 발생시킬 뿐 전체 과세기간을 합산해서 생각하면 과세소득에 차이를 주지 않는 유보사항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매년 번거로운 세무조정을 반복해야 하는 실무상의 부담을 능가할 만큼 조세행정 측면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KIFRS에서 종전의 비용처리 원칙을 불허하고 자본화를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되더라도 회계처리의 간편성을 도모하고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입장을 고수하는 한, 비상장기업이 기업회계에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를 자본화하는 복잡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가 사업용 고

정자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는 기업회계(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자산과 그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FRS는 국제적 정합성 때문에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세법에 맞춰 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세무조정 업무부담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은 세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을 유발시키며, 특히 건설자금이자자는 실무적으로 세무조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기업회계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이들 두 기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자의 세무조정업무 및 조세행정 측면에서 업무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를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회계처리 대안의 경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감안하여 새롭게 제정된 KIFRS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세무회계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토록 하는 것은 큰 실익도 없이 기업들의 세무회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덜어주려 하였지만, 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자의 손금불산입 입장을 고수하는 한 비상장기업이 기업회계에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를 자본화하는 복잡한 세무조정 업무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

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국한되며, 이는 기업회계(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자산과 그 적용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KIFRS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이들 기업의 세무조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Chung, K. Y., and S. P. Cho. "A Study on the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Korean Accounting Journal 7(1), pp. 29-60, June, 1998. (printed in Korean)
- [2] Chung, Y. K., and Y. H. Park.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and International Convergence", Korean Accounting Journal 15, pp. 113-139, June, 2006. (printed in Korean)
- [3] Moon, S. H., and K. T. Kim. "The Differen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GAAP and Tax Law on Tangible Assets", Korean Accounting Journal 18(3), pp. 69-102, September, 2009. (printed in Korean)
- [4] Shin, H. G. "The Effects of Interest Capitalizat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Korean Accounting Journal 12(4), pp. 39-63, December, 2003. (printed in Korean)
- [5] KASB,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Chapter 18: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November, 2009.
- [6] KASB,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1023: Borrowing Costs, November, 2008.
- [7] KASB, Statement of Korea Accounting Standards No. 7: Borrowing Costs, November, 2008.
- [8]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23: Borrowing Costs, March, 2007.

유 재 권(Jae-Kwon Yoo)

[정회원]



- 198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 1988년 8월 ~ 2011년 2월 : 삼일회계법인
- 2011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회계학, 재무관리